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생활체육위원회 규정

제정 2026. 01. 29.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정관 제37조에 따라 생활체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생활체육 업무의 공정성 확보와 효율성을 높이고 생활체육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 심의하고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2.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3. 각종 생활체육사업 개최 및 참가 지원에 관한 사항
4. 생활체육 신규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5.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활체육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1명
3. 위원은 5명 이상 11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의 위원은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사무처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선임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1. 체육계 현장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체육시설 또는 생활체육 관련 공공시설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보건·안전·의료·재난관리 등 분야에서 체육활동 안전관리 또는 건강증진과 관련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체육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한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7조(회의 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의 해촉) ①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10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의무사항)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3조(수당 등) 본회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위원회 등 실비변상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2026. 1. 2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